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완석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오영탁 의원 등 6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20년 3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3. 제안이유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대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지원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비용지급 대상, 비용의 신청 및 지급,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화재발생으로 시급을 요하는 소방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신속한 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주차나 정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원활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사람에게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 제25조제2항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 및 제3조는 비용 지급대상과 비용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 하도록 규정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2. 27.~'20. 3. 3.)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화재발생으로 시급을 요하는 소방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신속한 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주차나 정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원활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사람에게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